





보도자료

5월 12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

배 포	. 일	2020. 5. 11. / (총 3매)	담당부서	보건의료정책과
과	장	김 국 일	- 전 화	044-202-2420
담 당	· 자	유 정 민	T 선 약	044-202-2404

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, 방법 등 구체화

-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5.12)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「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」이 5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지난해 12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,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.
 - * 법률 제16729호, 2019.12.3. 개정, 2020.6.4. 시행
- □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6월 4일 시행)
 - 첫째,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, 평균 재원 일수, 병상 이용률,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, 인력·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였다 (영 제14조제1항).
 - 둘째,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(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)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(영 제14조제2항).









- 셋째,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(mohw.go.kr)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·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(영 제14조제3항).
- □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"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,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- < 참고 > 보건의료 실태조사 개요
- < 별첨 >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











참고

보건의료 실태조사 개요

□ 보건의료 실태조사 개요

- (목적)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·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 - ※ 추진근거 :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
- (내용)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, 보건의료 자원(인력· 시설·물자 등)에 관한 실태
- (경과)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





